

협약서

「평정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위 (수)탁 협약서

2023. 4.



함양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평정마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위(수)탁 협약서



『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제3조, 제40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 제56조, 제58조~61조, 제114조~11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에 근거를 두고, '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및 시행지침에 따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탁자 함양군수(이하 “위탁자” 라 한다)와 수탁자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이하 “수탁자” 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평정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1. 사업명 : 평정마을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2.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평정마을 일원
 3. 추정사업비 : 2,113백만원(국비 1,510, 지방비 603)
 4. 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5.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4년간)
 6. 위(수)탁 업무범위 :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공사감리 등 사업시행 일괄 위탁
- ※ 총사업비, 사업내용, 사업기간은 예산 및 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공사 및 수의계약 범위 내의 시행 건은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한다.

제 1 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평정마을 일원의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탁업무 및 위탁기간)

① “함양군수” 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에게 평정마을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업무를 일괄 위탁한다.



1.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공사의 시행, 공사감리 등 사업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2. 개발행위허가, 점·사용협의, 농지전용,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검토 등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이 추진하고 “함양군수” 은 본 업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한다.
 3. 편입부지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준공업무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함양군수” 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이 협의하여 추가되는 업무
- ② 위(수)탁기간은 본 협약일로 부터 시설물 준공완료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함양군수” 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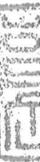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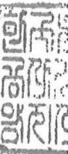
제 3 조(사업비 구성)

사업비는 균특(전환), 도비와 군비로 구성되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함양군수” 가 확보하여 교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은 사업비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사업시행)

기본계획(시행계획)수립 결과 확정된 총사업비에 따라 함양군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 시행은 단계별로 확보된 예산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소요총사업비 2,113백만원중 사업비는 예산편성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에게 교부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함양군수” 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



함양지사장”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토록 한다.

제 5 조(사업비 교부 및 정산)

① 제3조에 정한 사업비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은 “함양군수”와 협의하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함양군수”에게 보조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고, “함양군수”는 사업추진과 사업비 소요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은 공사추진상황과 매년도 사업시행계획, 공정계획표, 연도말 정산서를 “함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조의 수탁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이 종료한 때에는 준공정산서(CD, 준공도서 일체)를 “함양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자를 포함한 사업비의 잔액을 “함양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함양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에게 준공정산서를 승인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③ 사업 추진과정에서 “함양군수”의 사정 등으로 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고 “함양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이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제 6 조 (사업수행 내용)

① 세부설계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에 착수하고 승인결과를 반영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함양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이 사업에 착수 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은 승인된 사업시행 계획에 전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함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은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행계획 승인 시 조건사항을 사업시행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은 제2조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부설계, 시공사 선정, 시공감독, 기성 및 준공검사와 하자보수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의 명의로 권한, 책임으로 수행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은 준공검사(부분준공검사 포함)가 완료되면 준공 정산서를 “함양군수”에게 제출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은 본 사업의 완벽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설계, 공사감리, 타법에 의한 인허가 계획수립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이 주관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은 공사추진상황과 매년도 사업시행계획, 공정계획표, 연도말 정산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수”에게 제출한다.

제 8 조 (사업 위탁요율 적용 및 대가의 지급)

① 기본계획수립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으로 산정하고, 세부설계·공사감리·사업관리 등 대가의 요율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에 위탁요율 기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다.

②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공공디자인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 건축부분 설계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한다.

③ 공사시행 계약 관련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21조 1항 6호 및 시행규칙 24조 2항에 따라 건설공사 제한경쟁입찰을 둔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사전석면조사, 문화재지표(발굴)조사, 준공백서 작성 등의 추가업무 수행이 필요할 경우, 소요비용은 실비정액가 산방식에 의해 계상하되, 사업관리 외의 비용으로 계산하고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시설물 인계전에 발생한 유지관리비는 우선 사용하고 사업비 정산 시 반영한다.

⑥ “위탁자”와 “수탁자”는 사업과정에서 천재지변, 사업지구 위치 변경, “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협의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위탁자”는 중단 시점까지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 9 조 (지도감독)

“함양군수”는 대행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 지사장”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협의사항)

본 계약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함양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함양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제 11 조 (자료제공 등)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은 본 업무 수행 중 취득 또는 수립한 자료 중 사업시행 관련 근거자료나 참고자료 등에 대하여 “함양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 12 조 (비밀유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은 본 계약에 의한 성과와 본 계약으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열람, 누설,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함양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 작성하여, “함양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년 4월 일

위탁자 : 함 양 군 수(인)



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인)

